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3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18년 제 5822 호

인 증 서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 강남구 개포로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서울투자운용(주) 회의실

총 발 기 인 수	:	1명
발행한 주식의 총수:		60,000주
출 석 발 기 인 수 :		1명
출석발기인이 소유한 주식수:		60,000주

발기인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우진은 발기인 대표로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한 바 출석발기인은 발기인 대표 김우진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이를 수락하다.

의장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 소정의 수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한 후 출석 발기인에게 검토해 줄 것을 제의 하자 출석 발기인은 검토 후 만장일치로 동 정관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 3에 따라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을 두기

로하고 정관 제 조 제 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가 법인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선임방법을 물론 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 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감독이사 임 세 광

감독이사 조 철 희

제3호 의안 : 납입은행 및 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될 주식 대금의 납입은행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의 승인을 구한 바,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납입은행 및 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점

제4호 의안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를 발기인이 아닌 이사, 감사 전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자 전원 이의 없이 감독이사 전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위 감독이사 전원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검사인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이상으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오전 11시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한 발기인은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은 다음에 기명날인 하다.

2018년 10월 17일

발기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대표이사 김 우 진 (법인)



조사보고서

본인 등은 2018년 10월 17일 주식회사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00주이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60,0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로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보통주식 60,000주

* 2018년 10월 17일 인수 완료

* 발행가액: 1주당 금5,000원

2. 인수 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금300,000,000원이 2018년 10월 17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지점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3. 현물출자 및 기타 조사사항.

회사 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감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4. 기타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함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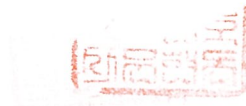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함.

2018년 10월 17일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독이사 임 세 광 (인)

감독이사 조 철 희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별지 제37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전화) T.02-591-8868
 (팩스) F.02-591-5841

등부 2018 년	제 5822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18년 10월 17일자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주주검 발기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의 대리인 권현욱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서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8년 10월 17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법무법인 민주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7층 (반포동, 홍익대 강남관)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문현도
아 래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위임장-----	